

# 이 유

## 1. 당사자 주장

### 가. 신청인 주장

- 2018년 10월부터 ○○로 ○○번지에 공터로 있던 부지에 땅을 파는 공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.
- 사장 같은 사람(○○)에게 어떤 공사를 하는지 물었더니 회장님이 알지 본인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.
- 그후 지인을 통해 고물상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년 10월 25일 저의 집 담에 연결고리를 해 놓고 철판을 세워 놓아서 담을 살펴보다 담이 갈라진 것을 보고 고물상 ○○씨께 담에 금이 갔다고 알렸고 혹시라도 고물상이 들오면 주민 모두가 결사반대 한다고 말하니 본인은 모르고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알아서 한다며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.
- 2018년 10월 30일 고물상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는 26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 ○○구청 도시개발과 ○○ 주무관에게 1차 민원접수 하였습니다.
- 11월 5일 2차 100명 가까운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○○구청 감사과에 제출하였습니다.
- 11월 6일 구청에서 답변오길 “향후 고물상과 같은 현 용도지역(제2종주거지역)에 맞지 않는 행위는 위법사항임을 주지시켰으며 주거지역내 위법행위를 하면 즉각적으로 계고 및 고발 처리 등을 이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.
- 때마침 저의 집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 고물상이 들어오면 이사를 간다고 하기에 구청에서 고물상이 들어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였으니 고물상은 못 들어 설 거라고 말했더니 재계약을 하게

되었습니다.

- 2018년 11월 7일 저녁 낮선 번호로 본인이 회장이라며 담에 금이 갔으면 돈을 물어주겠다고 하며 밤중에 저보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.
- 1995년부터 이집에 살면서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던 저의 가정은 고물상이 들어오고부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.
- 2019년 6월 21일 소음측정함 (측정소음도 :72 dB(A) (이날은 폐지소음), 폐지소음과 고철소음이 차이가 남
-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고철, 샷시, 냄비, 병, 박스 집어던지는 소리와 공사장에서 가지고온 폐기물을 전기 톱으로 다 잘라서 분리하는 소리, 드릴로 나사못 풀어서 분리하는 소리, 망치두드리는 소리를 매일 같이 들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폐기물을 해체해서 가져가기위해 전기 톱과 드릴, 망치를 이용해 소음을 더 부추깁니다.
- 하루에 1회~2회 대형 집게차가 와서 대형 폐기물차에 옮겨 싣는 소리가 30분 동안 납니다.
- ○○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 환경과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○○씨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건축과에선 현재 고물상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갈다 놓은 것 자체도 불법이라 벌금을 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준다며 저에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.
- 벽 높이가 180cm가 되면 구청에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규정 높이를 넘겨서 저의 지층은 아예 햇빛이 안 들어 와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
-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은 빛 봐야 살아나가는 활력소가 생기는데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집안에 햇빛도 안 들면 사는 사람들의 고통도 클 것입니다

- 또한 높게 방음벽을 설치한 만큼 방음벽이 기둥이 되어 더 많은 고물들을 저의 집 쪽으로 쌓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비산먼지와 분진, 악취, 해충 등 또 다른 불편함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.
- 중금속 먼지, 비산먼지와 분진, 해충으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어요.
- 집 안에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 놓고 싶어도 하루 종일 박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끈이질 않아 박스를 던지고 또 트럭으로 싣고 와서 집어던지고 또 집게차가 30분정도 대형트럭에 옮겨 실으면서 상당한 먼지와 전기톱으로 철관 같은 것을 자를 때 중금속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집안 환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.
- 문을 닫아도 들어오고 고물상 폐기물에서 나오는 먼지도 많아 건강에 위험도 걱정됩니다.
- 2019년 7월 너무 더워서 창문을 안 열 수가 없어서 며칠 열어 놓았는데 제가 원인 모를 기침에 2달 이상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.
- 그후 제대로 환기도 못 시키고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창문 한번 열지도 못 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
- 간혹 고물상이 퇴근하고 환기를 조금 시키려고 문을 열어 놓으면 고물상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면 더 심란하고 더 괴롭습니다.
- 지층에 세입자는 보일러실에 금이 갔다며 점점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.
- 또 지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다 집이 무너지는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.
- 방 계약이 안됩니다. 세입자 역시 소음, 먼지 해충으로 인해 환기도 못 시킴 1층 세입자 (○○)는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몸이 약하셔서 일을 못 하고 매일 집에 계시는 분입니다.
- 하루종일 계시면서 고물상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지금도 먼지와 냄새, 소음 때문에 환기도 못 시키지만 여름에도 덥고 답답해도 먼지와 냄새, 벌레 때문에 문을 전혀 열지

못하고 살고 계십니다.

- 이사를 가고 싶어서 부동산에 내놓으니 그 집은 누가 이사 올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집 소개하면 욕 얻어먹는다고 아예 소개할 생각조차 안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살고 계십니다.
- 이 또한 제가 고물상으로 인해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.
- 지층세입자 (○○, ○○) 역시 2020년 1월이 전세 계약 만기였는데 오래 살고 싶은데 집이 고물상으로 인해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보일러실 벽도 점점 더 갈라져서 무섭고 지층이라 습기가 많이 차서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벌레와 먼지, 냄새, 악취, 소음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고물상 소음과 진동 때문에 주말에 늦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.
- 평일에도 출근시간이 늦어 잠을 더 자고 싶어도 아침 7시부터 고물상에서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가 없어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직장에선 만성 피로 때문에 졸음으로 능률을 못 올려서 질타를 받기도 한답니다.
- 너무 괴로워서 이사를 간다고 방을 내 놓았지만 방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전세 보증금을 빼 달라고 하였습니다.
- 저는 도저히 전세금을 빼줄 능력도 없어서 보증금을 앞으로 계속 사는 동안은 더 이상 안올리고 수도세도 사는 동안은 안 받는 조건으로 사정 사정해서 다시 방이 나갈 때 까지 살게 되었습니다.
- 이 또한 고물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세를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올려 받고 오히려 세금까지 내주며 살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.
- 고물상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, 고의적으로 더 화를 나게 하는 행동, 집값하락 등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

- 위와 같은 일로 인해 저는 고물상 생각만하여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안한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불면증까지 생겨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식도염과 갑산성에 혹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.
- 남편(○○) 역시 직업 특성상 주말엔 근무 하고 평일2일이 휴일인데 고물상이 들어서고 부터는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며 밖으로만 돌고 있으니 생활비도 더 들어가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로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
- 딸(○○) 역시도 주말엔 늦잠도 자고 싶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소음으로 인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.
- 공사장 소음이라면 끝이라도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생긴 무단 고물상으로 인해 여름엔 07시 이전부터 21시까지, 겨울엔 07시부터 20시까지 국경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끝이 안 보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
- 언제까지 고물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도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.
-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 지면서 에어컨을 틀수도 없고 창문을 열고 싶어도 먼지와 악취 소음 때문에 문도 못 열어 놓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
- 피해보상 청구라도 해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.
- 금이 간 담 쌓는데 전적 2백만원 나온다고 합니다.

#### 나. 피신청인 주장

- 신청인은 ○○과 그의 남편이 2,000만 원, 나머지 4명은 1,000만 원씩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합계 8천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정하고 건물주인 ○○은 건물피해 2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신청인에게 보상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

있습니다.

- 2018. 10. 25. 신청인의 건물에 금이 갔다는 것을 신청인 ○○이 말하기에 피신청인이 ○○ 들어오기 전에 금이 갔고 내가 흰스친 것으로 금이 간 것 아니다 말했고, 고물상 들어오기 이전부터 금이 가 있었습니다.
- 햇빛 안들어와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집에서 고물상이 잘 보이지 않도록 컨테이너를 이동하고 약간 높게 가림막을 했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는 아닙니다.
- 2019. 7월 경에 문을 열어놓았더니 원인모를 기침에 2개월 동안 약을 먹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그때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는지 이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목적은 돈을 요구할 목적이 아니었나 싶네요.
- 고물상은 옛날과는 달리 먼지가 나지 않게 물을 뿌리면서 차량에 고물을 싣고 고물도 냄새나는 고물이 없습니다.
- 고물 싣는 차량도 하루에 한번이므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.
- 나머지 세 든 사람들의 피해는 ○○이 선동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입니다.
- 매일 소독약을 뿌려 질병의 위험도 없습니다.
- 콘테이너는 원래 출입구에 있었으나 구청에서 옮기는게 좋겠다고 하여 신청인의 담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.
-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하려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. ○○구청 역시 주민동의를 없으면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- ○○ 때문에 동네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리가 깨끗해져서 좋다 하고 무직자들 일거리가 있어 100여 명 정도 고물수집으로 약간의 돈을

벌어가므로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. 평균 하루 30여명정도가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.

- 주민들에게 물적,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 없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한분과 그 집 세든 분들만 중상모략을 하겠어요.
- 돈 뜯어내려는 속셈입니다. 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.
-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피해와 관련 당 사업장에서 환경피해방지(저감)를 위해 조치한 사항은 웬스를 약간 높게 설치하여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컨테이너를 이동하여 주민이 원하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매일 소독을 하여 코로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고 있습니다.
- 맑은환경과에서 소음측정결과(측정은 5t 집게차 가동시 측정함) 기준초과로 방음벽시설 설치명령을 받았으나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통풍방해, 조망권 침해 등 민원제기에 따라 방음벽 설치시 주민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당 민원제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방음벽 설치를 못 함.

### 3. 사실조사 결과

#### 가. 분쟁지역 개황

-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다세대주택, 빌라,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○○가 인접하고 있어 차량 등 교통소음의 영향으로 정온한 환경은 아니며 피신청인과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다.

#### 나. 신청인 건물 현황

- 위 치: ○○구 ○○중앙로 49-7, 2층
- 지 역: 제2종일반주거지역

- 규 모: 지하1층, 지상2층
- 용 도: 주택
- 구 조: 연와조
- 사용승인: 1989. 8. 29.

#### **다.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**

- 업체명: ○○
- 업 종: 도소매업(고물상)
- 위 치: ○○구 ○○중앙로 47
- 대지면적: 338 $m^2$
- 사업자등록일: 2019년 1월 21일
- 계량증명업 등록일: 2019년 2월 15일

#### **라.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현황**

-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
  - 사업장을 상대로 인근 주민의 소음 등의 피해민원이 관할구청(맑은 환경과, 건축과)에 29회 제기되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.

### **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**

#### **가. 소음 피해 평가**

- 피신청인 사업장 5톤 트럭크레인(집게차) 가동 및 상차 작업시 신청인 거주지 2층에서 창호개방 후 ○○구청 맑은환경과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72dB(A)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에 대한 기준은 「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」 생활소음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적용하였다.

<표 1> 소음피해 인정기준

단위: dB(A)

근거	대상지역/ 소음원	구분	기준
「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」 생활소음 수인한도	주거지역 사업장	주간(06:00~22:00)	55
		야간(22:00~06:00)	45
「환경정책기본법」	주거지역	주간(06:00~22:00)	55
		야간(22:00~06:00)	45
「소음진동관리법」 생활소음규제기준	주거지역 사업장 (기타)	주간(07:00~18:00)	50
		아침(05:00~07:00)	50
		저녁(18:00~22:00)	50
		야간(22:00~05:00)	45

- 피신청인이 제시한 ‘거래처별 품명 명세서’(2019. 4. 6. ~ 2020. 9. 19) 자료와 계량기 최초 등록일(2019. 2. 15.), 신청인이 소음 인지시점(2019. 2월 초)을 고려하여 트럭크레인 작업일을 344일로 산출하였으며 이중 7일간의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.

[표 4] 신청인 거주지 초과소음도별 피해일수

초과소음도 (dB(A))	계	1~5	6~10	11~15	15~20
수인한도 초과일수 (344일)	344	0	-	-	344

## 나. 진동 피해 평가

- 각종 자료에 의하면, 등가진동레벨 기준 약 7m 이격거리에서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시행규칙 [별표8]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기준(제20조제3항 관련)의 생활진동 규제기준[65dB(V)]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류는 진동롤러, 탬핑롤러, 벽면다짐기, 향타기, 진동향타기, 브레이크(500kg 이상), 유압직

타공법, 압쇄기(동시작업), 불도저[25T(덤프,진동롤러)], 그레이더(덤프, 롤러포함) 등이다.

-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작업과정상 짐게차가 대형 트럭에 재활용품을 상차할 때 발생하는 진동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서, 피신청인 사업장과 신청인 거주지까지의 전달경로상 입지여건, 통상의 피해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시행규칙 [별표8]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기준(제20조 제3항 관련)의 생활진동 규제기준[65dB(V)]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.

#### **다. 먼지·악취 피해 평가**

- 피신청인은 방진벽과 방진천막을 설치하고 살수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먼지·악취 저감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, 통상적인 이들 저감시설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이 있었다면 일시적인 먼지·악취 발생에 따른 피해는 있을 수 있으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·악취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.

#### **라. 건물균열 피해 평가**

-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해 평가한다.
- 본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측의 피해 주장 내용에 미친 피신청인 작업 영향정도를 평가한다.
- 피신청인 작업으로 인한 발생·작용한 진동과 “신청인 소유건물에 현존하는 결함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만을 그 평가범위로 하였다.
-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시 사용한 장비는 1.0t트럭과 5.0t짐게차이다.
-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의하면,

진동이 제일 강한 집게차[콘크리트 압쇄기로 평가: 이격거리 7.0m에서 진동도는 최대 55dB(V)]이며, 건물과의 최단이격거리는 약 8.0m일 때의 최대진동속도(VL)는, 한국환경정책·연구평가원의 추정식을 사용하면 0.045cm/sec(kine)이다.

## 4. 판단

- 트럭크레인(집게차) 작업시 측정소음이 72dB(A)로 「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」 생활소음 수인한도(55dB(A))를 최대 17dB(A) 초과하여 집게차 작업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- 통상의 집게차 작업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생활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집게차 상차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·악취가 대기조건의 흐름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피신청인 작업으로 인한 추정최대진동속도는 0.045cm/sec로, 노후화된 연와조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.35cm/sec (0.7×0.5cm/sec)미만으로, 신청인 건물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- 신청인의 건물에 현존하는 결함들은 담장균열, 지하벽채균열, 지붕하부 마감재 누수 등인데, 이는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된 결함이라고 판단된다.

## 5. 배상수준 검토

### 가. 배상책임

- 피신청인 ○○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및 같은 법 제44조(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)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## 나. 배상범위

- 사업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신청인 ○○ 외 5명에게 배상한다.
- 트럭크레인 작업시간이 1일 1시간 이내로 소음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소음 피해 배상액에 50%를 적용한다.
- 직장인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은 피해시간의 정도를 감안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70%를 적용한다.
- 공휴일 작업으로 피해가 가중된 점이 인정되어 피해 배상액에 30%를 가산한다.

## 다. 배상금액 검토

-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2,966,400원, 가산금 889,920원  
재정 수수료 11,540원을 포함하여 **합계 금3,867,860원** 이다.
- 사업장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액: 2,966,400원
- 공휴일 작업에 따른 가산: 889,920원
- 재정수수료: 11,540원

## 6. 결론

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서류, 현지조사결과, 전문가 의견,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